

근로자 건강관리카드

(앞면)

사진 2.5cm×3cm	발급번호 :
	성 명 :
	생년월일 :
	주 소 :
	물 질 명 :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7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합니다.	
년 월 일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	

(뒷면)

주 의 사 항
1. 이 카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7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카드입니다.
2. 이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, 카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달리 수정·변경해서는 안 됩니다.
4. 이 카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(www.kosha.or.kr)